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272
----------	-----

제출년월일 : 2007. 11. 8.

제출자 : 대전광역시교육감

1. 제안 이유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의 전문성·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심의회 위원 구성에 외부위원 2인을 추가하고,
-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시설심의위원회에서 증·개축하기로 결정된 재산과 교육감 및 교육장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며,
- 단위 학교에 행정권한이양을 확대하고,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잡종재산 대부업무를 제1관서에 위임하고 대부료를 학교회계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에 외부위원 2인을 추가하여 심의회 위원을 9인 및 7인으로 함. (안 제5조)
- 나. 재난시설심의위원회에서 증·개축하기로 결정된 재산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 다. 잡종재산의 대부업무를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대부료를 학교회계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 제25조)

- 라.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대부료의 연간 감액 비율 한도를 70%에서 50%~30%로 함. (안 제34조)
- 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토지의 지하·지상 공간 사용료 및 분수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함. (안 제31조, 제45조, 제63조)
- 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범위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정비함. (안 제41조)
- 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문화예술진흥법」 등 본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 및 조문을 정비함. (안 제2조, 제30조, 제40조)

3. 기타사항

- 가.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나. 관련법령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라. 합의사항 : 시설과와 공유심의회 심의 생략 규정 협의
- 마. 부패영향 평가 : 이상없음
- 바. 입법예고 :
 - 입법예고기간 : 2007. 8.28. ~ 9.17.
 - 입법예고결과 :
 - 의견내용 : 공유재산심의회에 외부위원 2명 추가 구성
 - 반영여부 : 본 의견을 검토한 결과 전문성·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합리적인 의견이라 판단되어 본 조례안에 반영함.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33조"를 "제30조"로 하고, 같은 조제3호 중 "제36조"를 "제34조"로 한다.

제4조제1호 가목 중 "관리 및 사용·수익허가"를 "관리,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7인"을 "9인"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2호 중 "시설과장이 된다."를 "시설과장 및 교육감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3호 중 "세입·재산관리담당"을 "세입·재산담당"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제1호 중 "5인"을 "7인"으로 하며, 같은 조제4항제2호 중 "재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관리과장"을 "총무과장"으로, "시설과장이 된다."를 "시설과장 및 교육장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로 하고, 같은조 제4항제3호 중 "세입·재산관리담당"을 "세입·재산담당"으로 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토지"를 "토지의 취득·처분"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제3호 중 "대장가액"을 "영 제7조 제1항 제1호의 예정가격"으로 하며, 같은 조제2항제4호와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시설심의위원회에서 철거, 개축 등으로 심사 결정된 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및 처분
5. 대전광역시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약서 등을 체결하여 신축 및 증·개축하기로 결정된 재산의 취득

제25조 중 "행정·보존재산의 사용료"를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로 한다.

제30조제2항제5호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5항제2호 중 "「농어촌 정비법」 제2조제4호"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로 하며, 같은 조제5항제3호 중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을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문화시설"로 하며, 같은 조제5항제4호 중 "「사회복지 사업법」"을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항 중 "제13조제7항"을 "제13조제8항"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10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로 하여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300

제40조제1항제2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3호 중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한다.

제41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조제4호 중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 포함"을 "다만, 단독주택의 경우 200㎡를 한도로 한다."로, "분할매각할 수 있다."를 "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 시 잔여지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결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제63조제1항 중 "1,000만원"을 "3,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1호 중 "200만원"을 "600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제1항제2호 중 "100만원"을 "3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2. 위원장은 관리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u>재무과장</u>이 되며 위원은 평생교육체육과장, <u>관리과장</u>, <u>시설과장</u>이 된다.</p> <p>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무과 <u>세입·재산관리담당</u>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p> <p>4. (생략)</p> <p>제6조(공유재산심의회 의 업무)</p> <p>①(생략)</p> <p>②(생략)</p> <p>1. (생략)</p> <p>2.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u>토지</u></p> <p>3. <u>대장가액</u> 5천만원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및 330제곱미터 이하 토지(당해 토지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대장가액 5천만원이하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u><신 설></u></p> <p><u><신 설></u></p> <p>제25조(행정·보존재산의 준용 등)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기타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잡종재산 대부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u>행정·보존재산의 사용료는</u> 학교회계로 취급할 수 있다.</p> <p>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생략)</p> <p>②(생략)</p> <p>1. ~ 4. (생략)</p>	<p>2. ----- <u>행정과장</u> ----- <u>총무과장</u>, <u>시설과장</u> 및 <u>교육장이</u> 위촉하는 외부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p> <p>3. ----- <u>세입·재산담당</u>----- -----</p> <p>4. (현행과 같음) 제6조(공유재산심의회 의 업무)</p> <p>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 ----- <u>토지의 취득·처분</u></p> <p>3. <u>영 제7조제1항제1호의 예정가격</u> ----- ----- -----</p> <p>4. <u>대전광역시교육청 재난시설심의위원회에서</u> 철거, 개축 등으로 심사 결정된 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및 처분</p> <p>5. <u>대전광역시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u> 협약서 등을 체결하여 신축 및 증·개축하기로 결정된 재산의 취득</p> <p>제25조(행정·보존재산의 준용 등) ----- ----- ----- <u>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u> ----- -----</p> <p>제30조(대부료의 요율) 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5. 주거용 건물(「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에 한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u>국민기초 생활 보장법</u>」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p> <p>③·④(생략)</p> <p>⑤ 「<u>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u>」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교재산의 대부요율은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폐교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30이상으로 한다.</p> <p>1. (생략)</p> <p>2. 폐교일 이전 5년이상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중학구안에 거주하여 온 자가 주민복지시설 또는 「<u>농어촌 정비법</u>」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이상</p> <p>3. 「<u>문화예술 진흥법</u>」 제2조의 규정에 의한 <u>문화예술 또는 문화사업</u>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p> <p>4. 「<u>사회복지 사업법</u>」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용도로 대부하는 폐교재산은 당해 폐교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p>	<p>5. ----- ----- ----- -----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 ----- ----- -----</p> <p>③·④(현행과 같음)</p> <p>⑤ ----- ----- -----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u>「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u> ----- ----- -----</p> <p>3. 「<u>문화예술진흥법</u>」----- ----- <u>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문화시설</u> ----- ----- -----</p> <p>4. 「<u>사회복지사업법</u>」----- ----- ----- -----</p>

현 행	개 정 안
<p>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 호의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 내에서 <u>분할매각할 수 있다.</u></p>	<p>----- ----- ----- ----- -----</p>
<p>5. (생략) <u>제45조(분수립의 설정) 영 제47조 규정에 의한 분수립의 설정에 관하여는 「산림법」상의 분수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u></p>	<p><u>분할매각할 수 있으며, 매각시 잔여지가 「건축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매수자 외의 연접 토지소유자가 없는 경우 잔여지까지 일괄매각할 수 있다.</u></p> <p>5. (현행과 같음) <u><삭 제></u></p>
<p><u>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u> ① 영 제84조제2항에 의한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u>1,000만원</u>을 초과할 수 없다</p> <p>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u>200만원</u>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p> <p>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기타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u>100만원</u>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p> <p>②~④(생략)</p>	<p><u>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u> ①----- ----- -----<u>3,000만원</u>----- -----</p> <p>1. ----- -----<u>600만원</u>----- -----</p> <p>2. ----- -----<u>300만원</u>----- -----</p> <p>②~④ (현행과 같음)</p>

관계(참고) 법령

◆ 법령 일부 발췌(조례안 순)

▣ 조례안 제2조 관련 (인용 규정 및 인용법명 변경에 따른 개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2006.12.20 법률 제8069호]

[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3호]

제30조 (보조기관) ①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1인(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70만명 이상인 시·도는 2인)을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한다.

②부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감이 추천한 자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부교육감은 교육감을 보좌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교육감 2인을 두는 경우에 그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그중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교육감 소속하에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한다.

⑥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지역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②지역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지역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례안 제5조 관련 (행정직제 변경에 따른 개정)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7.03.01 규칙 제453호]

[개정 2007.06.28 규칙 제467호]

제4장 지역교육청

제23조 (관리국) ① 관리국에 총무과·행정과 및 시설과를 둔다.

▣ 조례안 제6조 관련 (시행령의 예정가격 정의 규정 인용하여 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6호]

제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인 재산.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로 하고, 건물 그 밖의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건축비 및 시설비로 한다.

▣ 조례안 제30조 및 제40조 관련 (인용 규정 및 인용법명 변경에 따른 개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 2005.12.23 법률 7738호] **법명변경**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 2005.5.31 법률 7550호] **법명변경**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와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 개발 및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을 말한다.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의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양수장), 관정(관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취입보), 용수로, 배수로, 웅덩이(유지), 도로, 방조제, 둑(제방)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 2007.4.11 법률 제8345호] **법명변경**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

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 2005.7.13 법률 7587호] **법명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2005.3.18 법률 7392호] **법명변경**

■ 조례안 제31조 관련 (삭제)

- (시행령 조문의 신설로 인한 조례 관련 조문 삭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6호]

제31조 (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⑥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하고,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신설 2006.12.30>

■ 조례안 제34조 관련 (조례로 위임된 규정의 변경에 따른 개정)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7.2 대통령령 제20144호]

제3조의2 (대부료의 감액 등) ①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폐교재산을 감액하여 대부하는 경우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7.2>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 제3조제2항에 따른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

▣ 조례안 제41조 관련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7.9.10 대통령령 제20254호]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4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이상을 말한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 조례안 제45조 관련

- (시행령 조문의 삭제로 인한 조례 관련 조문 삭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6호]

제47조 삭제 <2006.12.30>

삭제된 시행령

제47조 (분수림의 설정)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림을 목적으로 공유림에 분수림(분수림)을 설정하여 당해 분수림에서 생긴 수익을 지방자치단체와 조림자 사이에 분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수림의 설정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참고사항

- 분수림이란?

산림으로부터 얻는 수익의 분수(分收)를 목적으로 산림소유자(국가 또는 개인)와 시업자(施業者) 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조림을 실시한 국유림 또는 민유림.

■ 조례안 제63조 관련

- (시행령 개정으로 인한 조례 관련 조문 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6.12.30 대통령령 제19816호]

제84조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 ①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을 발견하여 신고한 재산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이 확정된 때에는 그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보상금은 **3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은닉재산의 종류별로 그 보상률과 최고액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2.30>

③은닉된 공유재산을 신고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상이한 경우에는 잔여분에 한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심 사 보 고 서

2007. 11. 26

교육사회위원회

I.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7. 11. 8 대전광역시교육감

나. 회 부 일 자 : 2007. 11. 8

다. 상 정 일 자 : 제170회 대전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2007. 11. 26)
상정, 질의, 심사, 원안가결

II.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기획관리국장 이치범)

1. 제안이유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에 외부위원을 추가하여 심의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에 외부위원 2인을 추가하여 심의회 위원을 7인과 9인으로 함(안 제5조).

나. 재난시설심의회에서 증·개축하기로 결정된 재산과 협약서를

체결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다. 잡종재산의 대부업무를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고, 대부료를 학교회계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25조).

라.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 한도를 70%에서 50~30%로 함.(안 제34조).

마. 토지의 지하·지상공간 사용료 및 분수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금액을 상향조정함(안 제31조, 제45조, 제63조).

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범위를 행정자치부 표준안에 맞게 정비함(안 제41조).

사. 인용 범명 및 조문을 정비함(안 제2조, 제30조, 제40조).

III. 검토의견 (전문위원 : 안문환)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구성에 외부위원의 추가, 잡종재산 대부료의 학교회계 취급, 폐교재산 대부료의 감액비율 한도 조정,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 지급금액 상향조정, 인용범명 및 조문정비 등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 인용 범명 및 조문 정비
- 제5조는 교육감 및 교육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심의회위원을 “5인과 7인”을 “7인과 9인”으로 함.
- 제6조는 재난시설심의위원회에서 철거, 개축 등으로 심사 결정된 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및 처분 등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 제34조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의 범위를 정함.
- 제41조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재산범위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맞게 함.
- 제45조는 분수립의 설정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 제63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은닉된 공유재산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상향 조정함.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인용 법령과 조문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타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입법예고시 의견제출 내용의 반영 사항인 외부인원 2명을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으로 추가하였으며,

2007년 8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시달된 공유재산관리조례 표준개정(안)에 의해 은닉재산 신고 보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한 사항으로 특이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IV. 질 의 요 지 : 생 략

V.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V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